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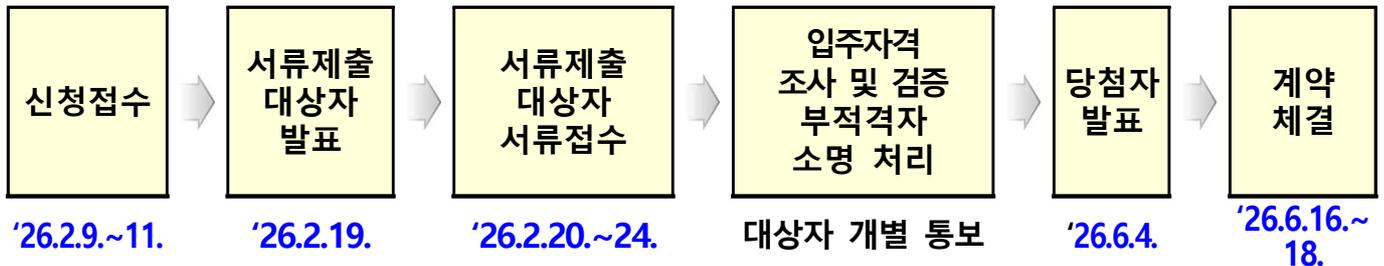
해남해리 2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1.26.] 주택관리번호 [2026-000021]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2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공급대상별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됩니다.
- 임대조건이 변경(임대조건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공급 형별	건설호수 (호)	현재 예비자 (명)	금회모집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공급호수	예비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37A	104	-	10	60	37.56	19.3403	4.9521	14.9715	76.8239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6. 02
37B (주거약자용)	4	-	1	6	37.56	19.3403	4.9521	14.9715	76.8239		
46A	168	-	43	90	46.00	23.2108	6.0649	18.3358	93.6115		
46B (주거약자용)	4	-	-	6	46.00	23.2108	6.0649	18.3358	93.6115		

■ 임대조건

공급 형태	임대조건			월임대료 (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잔금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37A	16,570,000	828,500	15,741,500	244,960	(+) 19,000,000	35,570,000	149,960
37B					(-) 9,000,000		
46A	25,230,000	1,261,500	23,968,500	314,970	(+) 9,000,000	34,230,000	269,970
46B					(-) 16,000,000		

- (주택 안내)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 (37B, 46B)'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하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제 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참고사항		
		70%	80%	90%			
		1인	2,518,715	2,878,531		3,238,348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	3,833,902	4,381,602		4,929,303	
		3인	5,338,881	6,101,578		6,864,276	
		4인	6,004,662	6,862,470		7,720,279	
		5인	6,321,734	7,224,838		8,127,943	
		6인	6,813,160	7,786,469		8,759,777	
		7인	7,304,587	8,348,099		9,391,612	
8인	7,796,013	8,909,730	10,023,446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0,000 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단위 : 만원)

출산자녀 수	총자산 가액	자동차가액
0명(기준)	33,700	4,563
1명	37,100	5,020
2명	40,500	5,476

3. 공급일정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인터넷 접수] '26.2.9.(월) 10:00 ~ '26.2.11.(수) 16:00	'26.2.19.(목) 14:00 이후 (확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등기우편 제출] '26.2.20.(금) ~ '26.2.24.(화) * '26.2.24(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불가)	'26.6.4.(목) 14:00 이후 (확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 (1661-7700)	[전자계약] '26.6.16.(화) 10:00 ~ '26.6.18.(목) 16:00
[현장접수] '26.2.11.(수) 10:00 ~ 16:00 (단, 12:00~13:00 제외) * 장소 : LH목포권 주거복지지사 옆 주택계약실	(확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해남해리2BL 담당자	(확인)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ARS (1661-7700)	[현장계약] '26.6.18.(목) 10:00~16:00 * 장소 : LH목포권 주거복지지사 옆 주택계약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청약플러스)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현장접수 시 신분증 및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LH 목포권주거복지지사 2층 주택계약실 (수문로 32 트윈스타 2층)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불가)

4.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일을 포함한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신청장소	LH 목포권 주거복지지사 주택계약실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2층 LH 목포권 주거복지지사 주택계약실
약도	

5.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 현장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026.02.24)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발송주소]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해남해리2BL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해남해리 2BL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본인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개인별 등기우편 발송일 3일이상 경과 후 가능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시(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안내문에 안내합니다. -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6. 입주자선정

일반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① 순위

② 배점

③ 추첨

■ 순위기준

순위	배 점 기 준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전라남도 해남군 에 거주하는 자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에 거주하는 자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해남군) 거주기간 (최근 전입일부터 현재까지 거주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 (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 * 19세미만(2007.1.26.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④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가. 신혼부부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다.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p>※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 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p> <p>※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p>
<p>⑥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p>	<p>·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p> <p>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p> <p>나. <u>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u></p> <p>다. <u>일본군위안부피해자</u></p> <p>라. <u>지원대상 한부모가족</u></p> <p>마. <u>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u></p> <p>사. <u>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u></p> <p>아. <u>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u></p> <p>자. <u>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u></p> <p>카. <u>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hr/> <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p> <hr/> <p>· <u>영구임대주택 계약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u> : 3점</p>
<p>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p> <p>가. <u>최근 1년 이내에</u>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p> <p>나. <u>최근 3년 이내에</u>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p> <p>*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p> <p>*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p> <p>*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예를 들면 '22.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23.3.1일 명의변경, '23.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23.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p> <p>※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p>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 주거약자용 주택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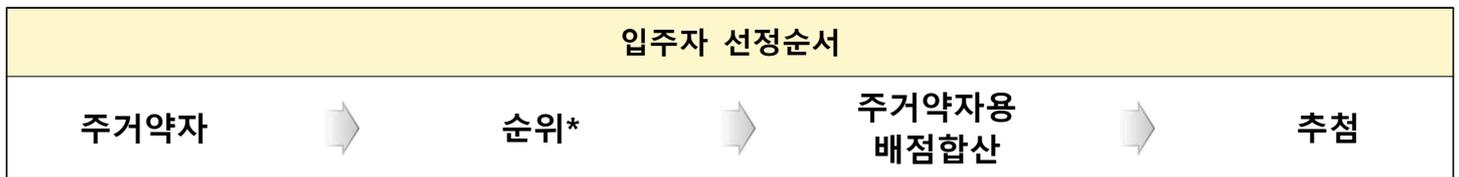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순위는 일반공급 순위와 동일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남군 최근 전입일부터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④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

7.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6.1.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대상) 전체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공사양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행정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p>※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남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남군에서의 거주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행정복지센터
	혼인관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신혼부부 또는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는 자 • (발급방법) - 신혼부부 또는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 공사양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p>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기타서류	<p>< 해당자만 제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입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각 지정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18민주유공자유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입주자 선정 참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행정복지센터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행정복지센터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 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대상자 결정통지서	여성 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⑦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⑧ 영구임대주택 계약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 확인원 청약통장 1면 사본	사업주체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2026.6.4.(목) 14:00 이후 발표] ※ 담당직원과의 우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 불가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6.6.16.(화) 10:00 ~ 6.18.(화)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계약 [2026.6.18.(목) 10시~16시(12시~13시 점심시간으로 계약체결 불가)]**

- 당첨자 중 정보취약계층(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현장계약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이 외의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전문**을 확인하시고,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팸플렛 배부처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플러스(apply.lh.or.kr)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26.



광주전남지역본부